

2023 총회 보고서

- * 일시 : 2023. 1. 29(일) 18:00
- * 장소 :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 목차

0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3
나. 조직(임직원) 명부	3
02. 회의록	
가. 총 회	5
나. 이사회	9
03. 2022년 사업보고	16
04. 2022년 감사보고	25
05. 2022년 결산보고	27
06. 2023년 사업계획	29
07. 2023년 예산(안)	33
08. 법인 정관	34
09. 회원규정	42

1. 조직

가. 법인 이사 명부

오정현 (사랑의교회)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삼환 (명성교회)
김종생 (소금의집)	김태영 (백양로교회)
김한호 (춘천동부교회)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박종삼 (한국개신교사회봉사연구소)	소강석 (새에덴교회)
손인웅 (덕수교회)	오정호 (새로남교회)
이순창 (연신교회)	정명철 (도림교회)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성진 (크로스로드)
황덕영 (새중앙교회)	※ 가나다순

나. 한국교회봉사단 조직(임직원) 명부

고 분	고 훈 김명혁 김상복 김장환 김철환 박경서 박경조 박종삼 박종화 손인웅 신경하 이정익 장 상 장차남 조성기 지용수 최희범	
임 원 회	총 재	김삼환
	부 총 재	정성진
	명예이사장	장종현
	법인이사장	오정현
	대표단장	김태영
	상임단장	소강석
	교단대표	강학근(고신) 고명진(기침) 김기남(개혁) 김원광(합신) 류영모(통합) 배광식(합동) 송태섭(고려개혁) 이상문(예성) 이정현(대신) 이 철(기감) 정동균(기하성) 지형은(기성)
	공동단장	권대진(합신) 김종준(합동) 김학중(기감) 류정호(기성) 문수석(합신) 신정호(통합) 안희복(기침) 양병희(백석) 오정호(합동) 유영완(기감) 이순창(통합) 이종승(백석) 전광식(고신) 전태식(기하성) 채광명(개혁) 천 환(고신) 최종호(기감)한기채(기성) 황형택(통합) / 감경철 두상달 김임권 박성철 박한길 이봉관 (재계)
	총괄본부장	정명철
	본 부 장	권위영(국내사업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주성민(북한사업본부장) 황순환(재난지원본부장) 박동찬(기후위기대응본부장) 이준우(디아코니아포럼)
의료지원단	인요한	
자문위원	학 계	서승환(연세대) 장범식(숭실대) 이광섭(한남대) 승현우(서울여대) 각 신학대 총장
	언론계	김진오(CBS) 최현탁(CTS) 천영호(C채널) 김명진(GoodTV) 변재운(국민일보)
기획위원	고영기 김보현 김일엽 김종명 박승호 변창배 신평식 엄진용 이영한 장현준 정무성 정성엽	
정책위원	강석진 고석현 김경호 김용출 남세도 박용근 박진규 백승환 오상열 임정문 정선자 정창도 최창환 황형식	
부분부장	1. 합 동	강정민, 고동훈, 김근영, 김미열, 김종원, 김철승, 김현중, 류명렬, 박명배, 박의서, 송태근, 연승철, 오주환, 이상화, 이재명, 정명호,

	정영교, 주연중, 홍성환
2. 통 합	고은범, 김기용, 김영철, 김한호, 김 활, 김희현, 박영철, 박요셉, 박종숙, 박춘수, 손병렬, 신광호, 신성호, 심영섭, 윤석호, 이규호, 정 훈, 최영태, 최충원, 황세형
3. 기 감	곽주한, 김병삼, 김상현, 김정석, 박동찬, 서호석, 정성학
4. 기하성	김명현, 김봉준, 신승남, 이요한, 정재우, 최길학, 함덕기
5. 백 석	문강원, 박응순, 이규환
6. 기 성	박순영, 윤성원, 윤창용, 이기용, 이상대, 조원근
7. 기 침	김근중, 김호민, 박상완, 박정근, 박창환, 윤재철, 정승룡
8. 고 신	김문훈, 박정근, 이수훈, 정현구
9. 합 신	김원광, 박삼열, 이주형, 이철호, 장덕만
10.기 장	강준모, 권오륜, 박유철, 이훈삼, 장 빈, 최홍규
11.구세군	이광열
12.독립교단	김승욱
	13. 예성 14. 대신 15. 개혁 16. 고려개혁
광역시도본부장	김의식(서울), 하근수(경기), ○○○(인천), 김철민(대전), ○○○(세종), ○○○(충북), ○○○(충남), 김대환(부산), 이상민(대구), 김종혁(울산), 김승학(경북), 이종삼(경남), 양원용(광주), 이국진(전북), 홍성호(전남), 강석훈(강원), 오공익(제주)
부분부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사협 이사	(김삼환) (김태영) (소강석) (오정호) 김종생 (손인용) (정성진) (고명진) 김동배 (이순창) 정명철 (박동찬) (김한호) (박종삼) (정무성) 황덕영
기사협 감사	김옥현 박홍자
월 드 이사	(김태영) 노영상 (전광식) (한기채) (천 환) 김성이 (전태식) 신관우 이형규
월 드 감사	김대권 김임권

2. 회의록

가. 총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1월 10일(월) 10:30 - 11:00

장 소 :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38명중 22명 참석으로 8명 위임으로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보고사항

가.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 및 결산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나. 2021년 감사보고

2021년 감사 결과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다.

5. 결의사항

가. 의안1.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나. 의안2. 정관변경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발의한대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u>구호 및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에 둔다. ② (생략)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u>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2</u> 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 2~7. (생략)	③ (생략) 1. <u>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17길 12</u> - 2~7. (생략)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u>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주관한다.</u>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u>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u>
< > <신설>	제5장 총재단
<신설>	제21조(총재단의 구성) 총재단은 총재, 부총재, 명예 이사장, 이사장, 대표단장, 상임단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22조(총재단의 선임) ① 총재와 부총재는 본회 대표를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총재단에서 추대한다. ③ 대표단장은 총재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제23조(총재단의 임기) ① 총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총재단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24조(총재단의 직무) ① 총재단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② 대표단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제25조(총재단 회의) ① 총재단 회의는 총재단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총재단 회의는 전원 합의체로 운영한다.
제5장 이사회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 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제27조(이사회 소집)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제29조(의결정족수)
제25조(서면결의)	제30조(서면결의)

—6장 재산과 회계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제31조(재산의 구분)																																																																					
제27조(재산의 관리)	제32조(재산의 관리)																																																																					
제28조(재원)	제33조(재원)																																																																					
제29조(회계년도)	제34조(회계년도)																																																																					
제30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제35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2조(회계감사)	제37조(회계감사)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총재단에서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제39조(차입금)																																																																					
제7장 사무 부서	제8장 사무 부서																																																																					
제35조(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총재단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대표단장의 추천으로 총재단에서 임명한다.																																																																					
<신설>	④ 그 외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단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41조(한국교회봉사단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회봉사단을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제42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제8장 보 칙	제9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제43조(법인해산)																																																																					
제39조(정관변경)	제44조(정관변경)																																																																					
제40조(업무보고)	제45조(업무보고)																																																																					
제41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42조(규칙제정)	제47조(규칙제정)																																																																					
별지1	별지1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재산</td> <td>종로구 연지동-136-46 카톨릭회관-705호</td> <td>건물</td> <td>13평</td> <td>11,880,000</td> <td>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td> <td>임대</td> </tr> <tr>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출연금</td> <td></td> <td>47,540,000</td> <td>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종로구 연지동-136-46 카톨릭회관-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기본재산목록</th> </tr> <tr> <th></th> <th>소재지</th> <th>자산 분류</th> <th>면적 (㎡)</th> <th>평가액 (원)</th> <th>출연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재산</td> <td></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td>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출연금</td> <td>59,420,000</td> <td>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td> <td></td> </tr> <tr> <td></td> <td>소계</td> <td></td> <td>59,4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종로구 연지동-136-46 카톨릭회관-705호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임대																																																																
		대지		-																																																																		
		출연금		47,54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기본재산목록																																																																						
	소재지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 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다. 의안3. 임원선임

2022년 3월 23일자로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기로 하다.

1)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에 오정현 목사의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2)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

◇ 임기만료 : 정성진 김성이 권태진 유만석 박경배 오정호 김종생(2018.05.21-2021.05.20)
손인웅 오정현 고명진 김동배 황성은(2019.03.23-2022.03.22)

◇ 신임추천

이사장 : 오정현(2022.03.23-2025.03.22) ※ 대표권 있는 이사

이 사 : 김삼환 김태영 소강석 오정호 김종생 손인웅 정성진 고명진 김동배 이순창 정명철
(2022.03.23-2025.03.22)

◇ 퇴임 이사

김성이 권태진 유만석 박경배 황성은

라. 주사무소 이전

주사무소를 2022년 3월 23일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2로 이전하기로 하다.

6.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손인웅 목사의 기도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전 11:00이었다.

2022년 1월 10일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1월 10일(월) 10:00 - 10:30
장 소 :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 회의

정성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개회기도

김성이 이사가 개회기도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

사무총장이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8명 위임 4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정성진 김동배 김성이 김종생 김한호 박종삼 손인웅 오정현
- 위임 : 고명진 정무성 박동찬 오정호
- 불참 : 유만석 권태진 박경배 황덕영 황성은
- 배석 : 김옥현(감사) 박홍자(감사) 천영철(사무총장)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2022년 총회 보고사항

- 가. 2021년 사업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나. 2021년 감사보고를 김옥현 감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다. 2021년 결산보고를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라.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천영철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2022년 총회 부의사항

- 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의 건
정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u>구호 및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 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신관401호 2~7. (생략)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u>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2</u> 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1. <u>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2</u> 2~7. (생략)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u>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주관한다.</u>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u>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u>
< >	제5장 총재단
<신설>	제21조(총재단의 구성) 총재단은 총재, 부총재, 명예이사장, 이사장, 대표단장, 상임단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22조(총재단의 선임) ① 총재와 부총재는 본회 대표를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총재단에서 추대한다. ③ 대표단장은 총재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제23조(총재단의 임기) ① 총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총재단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24조(총재단의 직무) ① 총재단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② 대표단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제25조(총재단 회의) ① 총재단 회의는 총재단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총재단 회의는 전원 합의체로 운영한다.
제5장 이사회	제6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	제26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u>및</u>

성한다.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의 소집)	제27조(이사회 의 소집)																																																																																																						
제23조(이사회 의 의결사항)	제28조(이사회 의 의결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제29조(의결정족수)																																																																																																						
제25조(서면결의)	제30조(서면결의)																																																																																																						
—6장 재산과 회계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제31조(재산의 구분)																																																																																																						
제27조(재산의 관리)	제32조(재산의 관리)																																																																																																						
제28조(재원)	제33조(재원)																																																																																																						
제29조(회계년도)	제34조(회계년도)																																																																																																						
제30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제35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2조(회계감사)	제37조(회계감사)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총재단에서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제39조(차입금)																																																																																																						
제7장 사무 부서	제8장 사무 부서																																																																																																						
제35조(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총재단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대표단장의 추천으로 총재단에서 임명한다.																																																																																																						
<u><신설></u>	④ 그 외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단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41조(한국교회봉사단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회봉사단을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제42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제8장 보 칙	제9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제43조(법인해산)																																																																																																						
제39조(정관변경)	제44조(정관변경)																																																																																																						
제40조(업무보고)	제45조(업무보고)																																																																																																						
제41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42조(규칙제정)	제47조(규칙제정)																																																																																																						
별지1	별지1																																																																																																						
<table border="1"> <thead> <tr> <th>기</th> <th>본</th> <th>자</th> <th>면</th> <th>평</th> <th>출</th> <th>비</th> </tr> <tr> <th>재</th> <th>산</th> <th>분</th> <th>적</th> <th>가</th> <th>연</th> <th>고</th> </tr> <tr> <th>산</th> <th>류</th> <th>류</th> <th>(㎡)</th> <th>액</th> <th>자</th> <th></th> </tr> <tr> <th></th> <th></th> <th></th> <th></th> <th>(원)</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td> <td>종로구</td> <td rowspan="2">-건물</td> <td rowspan="2">13평</td> <td rowspan="2">11,880,000</td> <td rowspan="2">한국기독교사</td> <td rowspan="2">임</td> </tr> <tr> <td>연자동 136-46</td> <td>회복지협의회</td> </tr> <tr> <td>재</td> <td>기독교회관 705호</td> <td></td> <td></td> <td></td> <td>대표 손인용</td> <td>대</td> </tr> <tr> <td></td> <td></td> <td>대지</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	본	자	면	평	출	비	재	산	분	적	가	연	고	산	류	류	(㎡)	액	자						(원)			기	종로구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임	연자동 136-46	회복지협의회	재	기독교회관 705호				대표 손인용	대			대지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기본재산목록</th> </tr> <tr> <th>기</th> <th>본</th> <th>소</th> <th>자</th> <th>면</th> <th>평</th> <th>출</th> </tr> <tr> <th>재</th> <th>산</th> <th>재</th> <th>산</th> <th>적</th> <th>가</th> <th>연</th> </tr> <tr> <th>산</th> <th>류</th> <th>지</th> <th>분</th> <th>(㎡)</th> <th>액</th> <th>자</th> </tr>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원)</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td> <td rowspan="2">재</td> <td rowspan="2"><삭제></td> <td rowspan="2">삭제</td> <td rowspan="2"><삭제></td> <td rowspan="2"><삭제></td> <td rowspan="2"><삭제></td> </tr> <tr> <td rowspan="2">대지</td>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본재산목록							기	본	소	자	면	평	출	재	산	재	산	적	가	연	산	류	지	분	(㎡)	액	자						(원)		기	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기	본	자	면	평	출	비																																																																																																	
재	산	분	적	가	연	고																																																																																																	
산	류	류	(㎡)	액	자																																																																																																		
				(원)																																																																																																			
기	종로구	-건물	13평	11,880,000	한국기독교사	임																																																																																																	
	연자동 136-46						회복지협의회																																																																																																
재	기독교회관 705호				대표 손인용	대																																																																																																	
		대지		-																																																																																																			
기본재산목록																																																																																																							
기	본	소	자	면	평	출																																																																																																	
재	산	재	산	적	가	연																																																																																																	
산	류	지	분	(㎡)	액	자																																																																																																	
					(원)																																																																																																		
기	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지	-																																																																																															

			47,54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용
	소계		59,420,000			소계		59,420,000		

나.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으로 오정현 목사의 선임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

임기만료 이사 선임의 건은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고, 미진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임기만료 : 정성진 김성이 권태진 유만석 박경배 오정호 김종생(2018.05.21-2021.05.20)
손인용 오정현 고명진 김동배 황성은(2019.03.23-2022.03.22)

◇신임추천

이사장 : 오정현(2022.03.23-2025.03.22)

이 사 : 김삼환 김태영 소강석 오정호 김종생 손인용 정성진 고명진 김동배 이순창 정명철
(2022.03.23-2025.03.22)

◇ 퇴임이사

김성이 권태진 유만석 박경배 황성은

5. 안건사항

가. 한국교회봉사단 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변경의 건

현행	개정(안)
제2조(임원 임명) 임원은 34인 이내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2조(임원 임명) 임원은 <삭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월드디아코니아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3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대표회장 1인 ②공동대표 10-15인 ③상임단장 10-15인 ④대표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	제3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총재 1인(대표회장 역임자 중에서 추대) ②부총재(대표회장/대표단장 역임자) ③명예이사장 1인(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추대) ④이사장 1인 ⑤대표단장 1인(구, 대표회장) ⑥상임단장 1인 ⑦교단대표 15인 이내로 한다. ⑧공동단장 25인 이내로 한다. ⑨총괄본부장 1인 ⑩사업본부장 5-7인 ⑪교계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단, 임원회 구성에서는 제외한다.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5조(총회의 구성) 제36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규정)에 의거한 실행위원회회의 직무	①(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5조(총회의 구성)에 의거한 <u>대의원의 직무 및 제41조(한국교회봉사단 구성과 운영규정)에 의거한 직무</u>
②(사)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5조(총회의 구성)에 의거한 대의원의 직무 및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규정)에 의거한 실행위원회회의 직무	②(사)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5조(총회의 구성)에 의거한 대의원의 직무 및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규정)에 의거한 실행위원회회의 직무
제6조(회의) ①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②임원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u>대표단장이</u>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②임원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u>회의 3일 전까지</u> 위임장을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u>대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제7조(의결사항 및 보고) 임원회는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사)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사전 심의·의결하여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의결사항 및 보고) 임원회는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u>제28조</u> (이사회의 의결사항), (사)월드디아코니아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사전 심의·의결하여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제8조(실무회의 및 결재) ① <u>실무회의는 대표단장의 필요에 의해 소집하며, 총재, 이사장, 대표단장, 상임단장, 총괄본부장, 사무총장을 구성원으로 한다.</u> ② <u>업무(사무, 재정 및 기타) 결재는 사무총장, 대표단장, 이사장, 총재로 하되, 평상 업무는 대표단장이 전결한다.</u>

나. 한국교회봉사단 임원 선임의 건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하고 그 수정 및 가감을 총재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고 문	고 훈 김명혁 김상복 김장환 김철환 박경서 박경조 박종삼 박종화 손인용 신경하 이정의 장 상 장차남 조성기 지용수 최희범	
임원	총재	김삼환
	부총재	정성진
	명예이사장	장종현
	법인이사장	오정현
	대표단장	김태영
	상임단장	소강석
회	교단대표	강학근(고신) 고명진(기침) 김기남(개혁) 김원광(합신) 류영모(통합) 광식(합동) 송대섭(고려개혁) 이상문(예성) 이정현(대신) 이 철(기감) 정동균(기하성) 지형은(기성)
	공동단장	권태진(합신) 김종준(합동) 류정호(기성) 문수석(합신) 신정호(통합) 안희목(기침) 양병희(백석) 오정호(합동) 유영완(기감) 이순창(통합) 이종승(백석) 전광식(고신) 전태식(기하성) 채광명(개혁) 천 환(고신) 최중호(기감) 한기채(기성) 감경철 두상달 김입권 박성철 박한길 이봉관(재계)
	총괄본부장	정명철
	본부장	권위영(국내사업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주성민(북한사업본부장) 황순환(재난지원본부장) 박동찬(기후위기대응본부장) 이준우(디아코니아포럼)
의료지원단	정 근 인요한	
자문위원	학 계	서승환(연세대) 장범식(숭실대) 이광섭(한남대) 승현우(서울여대) 각 신학대 총장
	언론계	김진오(CBS) 최현탁(CTS) 천영호(C채널) 김명전(GoodTV) 변재운(국민일보)

기획위원	고영기 김보현 김일엽 김종명 박승호 변창배 신평식 엄진용 이영한 장현준 정무성 정성엽	
정책위원	강석진 고석현 김경호 김용출 남세도 박용근 박진규 백승완 오상열 임정문 정선자 정창도 최창환 황형식	
부분부장	1. 합 동	강정민, 고동훈, 김근영, 김미열, 김종원, 김철승, 김현중, 류명렬, 박명배, 박의서, 송태근, 연승철, 오주환, 이상화, 이재명, 정명호, 정영교, 주연중, 홍성환
	2. 통 합	고은범, 김기용, 김영철, 김한호, 김 활, 김휘현, 박영철, 박요셉, 박종숙, 박춘수, 손병렬, 신광호, 신성호, 심영섭, 윤석호, 이규호, 정 훈, 최영태, 최충원, 황세형
	3. 기 감	곽주한, 김병삼, 김상현, 김정석, 박동찬, 서호석, 정성학
	4. 기하성	김명현, 김봉준, 신승남, 이요한, 정재우, 최길학, 함덕기
	5. 백 석	문강원, 박응순, 이규환
	6. 기 성	박순영, 윤성원, 윤창용, 이기용, 이상대, 조원근
	7. 기 칩	김근중, 김호민, 박상완, 박정근, 박창환, 윤재철, 정승룡
	8. 고 신	김문훈, 박정곤, 이수훈, 정현구
	9. 합 신	김원광, 박삼열, 이주형, 이철호, 장덕만
	10.기 장	강준모, 권오륜, 박유철, 이훈삼, 장 빈, 최홍규
	11.구세군	이광열
	12.독립교단	김승욱
광역시도본부장	김의식(서울), 하근수(경기), ○○○(인천), 김철민(대전), ○○○(세종), ○○○(충북), ○○○(충남), 김대환(부산), 이상민(대구), 김종혁(울산), 김승학(경북), 이종삼(경남), 양원용(광주), 이국진(전북), 홍성호(전남), 강석훈(강원), 오공익(제주)	
부분부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다.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변경의 건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그 수정 및 가감을 대표단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현행	개정(안)
제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u>대표단장의 추천으로 총재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u>
제8조(직원)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u>대표단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u>
제9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외 서카,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카 되고 서기는 임원회 서카로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사위원회는 <u>대표단장과 상임단장</u> ,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u>대표단장이</u> 되고 서기는 <u>사무총장으로</u>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략) 2. 직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10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략) 2. 직원의 <u>해임과 면직</u>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18조(정년) (생략) 1. 사무총장 : 65세 2. (생략) 3. (생략)	제18조(정년) (생략) 1. 사무총장 : <u>70세</u> 2. (생략) 3. (생략)
제31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1. (생략) 2.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31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1. (생략) 2. 근무시간은 <u>동절기(11월~3월)는 오전9시부터 오후</u>

	<u>후5시까지, 하절기(4월~10월)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u>
제43조(문서와 결재) 1. (생략) 2. 대표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43조(문서와 결재) 1. (생략) 2. <u>결재는 사무총장, 대표단장, 이사장, 총재로 하되, 평상업무는 대표단장이 전결한다.</u>
제49조(예산편성 및 승인) 한국교회봉사단 재정은 화계, 상임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가 승인을 한다.	제49조(예산편성 및 승인) 한국교회봉사단 재정은 <u>대표단장, 상임단장</u> ,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가 승인을 한다.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전 10:30이었다.

2022년 1월 10일

3. 2022년 사업보고

1. 2022 섬김의 비전 선포 예배

- 가. 일시 : 2022년 1월 10일(월) 오전 11시
- 나. 장소 : 사랑의교회 본당
- 다. 참석 : 2022 위촉 임역원 및 회원, 협력기관 관계자, 교계 지도자 등 300여명

2.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2 설날 사랑나눔

- 가.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14시 / 27일(목) 14시
- 나. 장소 : 동자동 성민교회, 돈의동
- 다. 참석 :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총괄본부장 정명철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 라. 내용 : 한과세트 700개 전달
- 마. 자원봉사 : 서울숲교회(국내사업본부장 권위영 목사)

3.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 가. 일시 : 2022년 3월 6일(주) 오후 4시
- 나. 장소 : 사랑의교회(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 다.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 라. 후원 : 한국교회총연합,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난민기구
- 마. 협력 :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CBS, C채널, GOODTV

4.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실사단 파견

- 가. 방문일정 : 2022년 3월 8일(화) - 3월 14일(월) / 7일간
- 나. 방문지역 : 루마니아
- 다. 실사단 : 천영철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박래득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국장)
서윤경 (국민일보 기자)
정원희 (기독신문 기자)
오요섭 (기독교방송CBS 기자)
정용현 (기독교방송CBS 촬영기자)
빅상진 (CTS 제작본부장)
김주원 (C채널 부장)

라. 구호활동

- 1) 루마니아 북동부 수체아바주 시레트 국경
 - 루마니아 선교단체 '다음세대 미션(GMG)과 협력해 시레트 국경에서 전쟁난민들에게 음식 제공
 - 우크라이나 한인선교사회 회장 한재성 선교사와 협력해

의약품, 양말, 침낭, 매트 등 생필품을 구입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와 빈닌치로 보급

2) 루마니아 남동부 툴체아주 이자체아 구경

- 루마니아 현지 교회들(베델순복음교회 등)과 협력해 우크
라이나 오데사 지역으로 의약품 보급

5. 경북 강원 산불피해현장 위로방문 및 모금 캠페인

가. 방문일시 : 3월 9일(수) 15:30

나. 방문장소 : 울진제일교회, 호산나교회, 성내교회

다. 방 문 자 : 김삼환(한교봉 총재)오정현(한교봉 이사장)
김태영(한교봉 대표단장)김승학(한교봉 경북 본부장)
김종생(한교봉 이사)한경균(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라. 지원내용 : 전소 피해 교회 2곳, 전소 피해 가정7가정,
울진산불피해상황실, 울진군청

6. 우크라이나 2차 긴급구호

가. 방문일정 : 2022년 4월 1일(금) - 4월 8(월) / 8일간

나. 방문지역 :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다. 실사단 : 김태영 한교봉 대표단장
천영철 한교봉 사무총장
김보현 예장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CTS부사장
박지훈 국민일보 기자

라. 활동내용

- 1) 체코형제복음교회 디아코니아 담당자 회의
- 2) 체코형제복음교회 협력 우크라이나 구호활동
- 3) 우크라이나 난민 헬프센터(프라하) 방문
- 4) 프라하 카젤대학교 개혁신학대학 미팅
- 5) 프우크라이나 난민 체코형제복음교회 지역교회에서 예배
- 6) 프체코복음교회 총회장 파벨 포르코니 미팅
- 7) 프헝가리개혁교회 총회 참석 및 비숍 미팅
- 8) 헝가리개혁교회AID MOU 및 우크라이나 협력사업 회의

7.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인과 울진 삼척 산불 피해주민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가.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오후 1시

나.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종로5가) 4층 크로스로드채플

다. 순서

사회 : 신평식 / 한교총 사무총장

회견문 낭독 :

- 1)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주택 건축을 위한 사업 : 류영모 목사
 - 2)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방문 보고 및 지원 계획 : 김태영 목사
- 질의응답

8.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구호 성금 전달식

- 가.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오후 4:00
나.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온라인 ZOOM)
다.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라. 후원 : 한국교회총연합
마. 순서

- 진행 : 천영철 목사 (한교봉 사무총장)
- 인사 : 김태영 목사 (한교봉 대표단장)
- 현장보고 : Mr. László Zságer (헝가리개혁교회봉사단)
- 경과보고 : 천영철 목사 (한교봉 사무총장)
- 성금전달 : 긴급구호 성금 1억원
- 감사인사 : 치베레 까로이 (Dr. Czibere Károly)
헝가리개혁교회봉사단(HRCA) 대표회장

9. 강원 산불 사랑의 집짓기 성금 전달식

- 가.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오후 3:30
나. 장 소 :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실
다. 성금전달 : 1억원 (사랑의교회 대학부 5천만원 포함)

10. 폭우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 및 지원

- 가. 모금기간 : 2022년 08월 12일 ~ 8월 31일
나. 지원내용 : 안양은혜교회, 청주사랑마을교회, 청주청운교회, 안산주찬양교회에
복구피해 지원

11. 2022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나눔

- 가.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 9월 1일(목)
나. 장 소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 종로구 돈의동
다. 대 상 : 동자동 쪽방주민 1,000세대, 돈의동 쪽방주민 500세대
라. 내 용 : 추석선물 전달 및 환우 심방

마. 자원봉사 : 치유하는교회(김의식/한교봉 서울지역본부장) 17명

바. 주 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12. 이삿날은 이웃에 기부하는 날” 사회적 기여 네트워크 협약식

가. 일 시 : 2022년 9월 1일(목) 11:00

나. 장 소 : CTS멀티미디어센터

다. 협약기관 : 한국교회봉사단, CTS기독교TV, EDU TV, 통인익스프레스, 이사어플 홈앤무브

라. 내 용 : 가정이나 기업에서 기증하는 생활 물품을 수집해 다문화, 새터민 가정 등 가
재도구를 마련해야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저렴하게 판매·기증하고, 해외 선
교 현지에서 요청하는 생활물품을 무상으로 운송하기로 논의

13.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캠페인 및

위로 방문, 지원

가. 일 시 : 2022년 9월 13일~14일

나. 장 소 : 포항대송교회, 엘림교회, 평강교회

다. 지원내용 : 각교회 1천만원, 생수 500만원

14. 포항 ‘힌남노’ 태풍 피해 주민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가. 일 시 : 2022년 10월 2일, 9일, 30일(주일)

나. 장 소 : 포항 오천교회, 송동교회

다. 대 상 : 힌남노 태풍 피해 주민 각50여 명

라. 내 용 :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
한 힌남노 태풍피해의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직면하며 해소함으로써 변화와 성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단표현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

마. 주 관 : 한국교회봉사단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치유목회연구원

바. 프로그램

심리치료 지원 단 : 단장 김태영 목사, 부단장 김의식 목사

심리치료 총괄업무 :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

심리치료 지원 단 : 운영 김상만 목사(치유목회연구원 교수)

심리치료 치 료 사 : 치유목회연구원 트라우마 치료 담당 교수 및 석박사 과정생
프/로/그/램

16:00-16:30 개회예배

16:30-17:00 프로그램 소개 및 별칭 짓기, 워밍업 단계

17:00-18:00 힌남노 경험을 풀라주로 표현하기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작품을 설명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20:00-21:00 작품을 노래, 드라마로 표현하기 / 마무리

15.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 섬김 사역

- 가. 일 시 : 2022년 10월 31일(월) ~ 11월 5일(토) 10시부터 18시까지
- 나. 장 소 :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
- 나. 주 관 : 한국교회봉사단 용산교구협의회
- 다. 자원봉사 : 용산교구협의회 소속 교회 성도
- 라. 내 용 : 분향소 조문객을 위한 차(TEA) 부스 운영

16. 770만 우크라이나 피란민 영하 30℃ 겨울나기 <한국교회 희망(HOPE)밥차> 긴급지원 캠페인

- 가. 모금기간 : 2022년 11월 3일(목)~12월 31일(토)
- 나. 공동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국민일보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사)글로벌호프 폴란드적십자
- 다. 후 원 : 한국교회총연합 유엔세계식량계획 엔난민기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 라. 내 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인프라가 파괴되어 난방은 물론 따뜻한 식사조차 어려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인 폴란드에 한국교회 희망(HOPE)밥차를 운영,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난민캠프 및 우크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17 해외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 가.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15시
- 나.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 다. 협약기관 : 한국교회봉사단,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사)글로벌호프
- 라. 순 서
진 행 | 김철훈 목사 (한교봉 사무총장)
인사말씀 | 김태영 목사 (한교봉 대표단장)
취지설명 | 김철훈 목사 (한교봉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정교회 후원 감사편지 전달 | 김영주 목사 (NCKK 정평국장)
인 사 | 김태영 대표단장 / 한국교회봉사단
인 사 | 김승원 대 표 /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인 사 | 조용중 대 표 / (사)글로벌호프
업무협약 | 한국교회봉사단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사)글로벌호프

18.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

- 가. 일 시 : 2022년 11월 5일(토) 11시
- 나. 장 소 :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
- 다. 주 최 : 한국교회이태원참사위로예배준비위원회
- 라. 협 력 : 한국교회총연합 · 한국교회봉사단

마. 후 원 : 국민일보 · CBS · CTS · C채널 · GOODTV · CGN · 극동방송
바. 순 서

■ 1부

사 회 : 김태영 목사(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
대표기도 : 장중현 목사(한교총 상임회장/백석 총회장)
설 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 2부

사 회 : 오정현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
추 모 사 : 고명진 목사(한교총 공동회장)
감사인사 : 지성호 목사(용산구교회와 구청협의회 회장)
특별기도 1.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을 위하여_한기채 목사(한교총 전 상임회장)
2.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위하여_김찬호 목사(기감 중부연회감독)
3.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_이봉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문 : 이순창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축 도 :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19. 한국교회봉사단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 일 시 : 2022년 11월 26일
나. 내 용 : 한국교회의 연합과 섬김의 정신이 녹아있는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 11월 26일 최종 등재

20. 태안 유류피해극복 15주년 기념 및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고 감사예배

가.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나. 장 소 : 태안 만리포교회,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다. 내 용 :
○1부 태안 유류피해극복 15주년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보고 감사예배
사 회 : 공하영 목사 (태안군기독교연합회)
대표기도 : 이은성 목사 (태안군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소망교회)
성경봉독 : 이강웅 장로 (태안군기독교연합회 회계)
설 교 : 정성진 목사 (한국교회봉사단 부총재)
축 도 : 박준하 사관 (태안국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태안군구세군교회)
○2부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유네스코등재 진행 설명 : 가세로 태안군수(代 박경찬 부군수)
태안 유류피해 상황 회고 : 이광희 목사(의항교회)
대표인사 : 김태영 목사(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 백양로교회)
○3부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
해 설 : 유성상 목사(만리포교회)

21.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2 성탄절 사랑나눔

- 가. 일 시 : 2022년 12월 21일(수) 14시 / 19(일) 15시
- 나. 장 소 : 동자동 성민교회, 돈의동
- 다. 대 상 : 동자동 쪽방주민 1,000세대, 돈의동 쪽방주민 500세대
- 라. 내 용 : 성탄절 선물 (참치종합선물세트) 700개 전달
- 마. 자원봉사 : 치유하는교회(김의식/한교봉 서울지역본부장)
- 바. 주 최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총연합

22. 태안 유류피해 극복 참여 및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참여 교단 총무/사무총장 연석 간담회

- 가. 일 시 : 2022. 12. 22(목) 오전7:30
- 나. 장 소 : 달개비
- 다. 참석자
 - 교 단 : 고영기(합동) 김보현(통합) 김순귀(개혁) 김우중(순장) 김일엽(기침)
김창주(기장) 문창국(기성) 이강춘(예성) 이승진(합동중앙) 장인호(대신)
정성엽(합신)
 - 기 관 : 신평식(한국교회총연합) 이진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교봉 : 김태영(대표단장) 권위영(국내사업본부장) 김철훈(사무총장)
- 다. 논의내용 :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5주년 감사예배에 관한 한교봉과 각 교단의 업무 협력 방안 논의
- 라.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 1) 일시 : 2023년 1월 29일(주일) 19시
 - 2) 장소 : 명성교회 예루살렘성전(본당)
 - 3) 주최 : 한국교회봉사단
 - 4) 협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교회총연합회
 - 5) 후원 : 국민일보 · CBS · CTS · C채널 · GOODTV · CGN · 극동방송

23.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과 함께 겨울나기

<한국교회 희망밥차 2호 출발식 및 희망물류 전달식> 및 대한민국 청년대사 2기 발대식

- 가. 일 시 : 2022년 12월 22일(목) 11시
- 나. 장 소 : 신안산대학교 내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 다. 내 용 : 우크라이나 희망밥차 · 희망물류 전달식
우크라이나 희망밥차 1호 진행사항 보고 및 2호 출발식
대한민국 청년대사 2기 발대식
- 라. 지원대상 : 희망밥차 2호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특히 한국에 들어와 인천, 충남 아산, 광주 등지에 머무는 고려인 지원에 사용

24. 우크라이나 겨울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발전기 지원사업

- 가. 사업목적 :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의 전력난을 지원하고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력 필요를 충족하여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복음전파를 위하여 유용한 장소가 되고자 함.
- 나. 내 용 : 1m에 다다른 폭설과 영하 15도의 날씨의 혹한기로 어려움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가정용 전기 발전기를 공급, 전달된 발전기는 추위를 이기는 용도만이 아니라 핸드폰 충전을 통해 흩어진 가족들에게 생사여부를 전하는 용도로 사용
- 나. 공동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

25.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

- 가. 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나. 내용 : 절기별 선물 전달 및 협동사업 정기활동 지원
주민 반찬나눔 (매주 70여명)

26. 연대사업

- 가. 한국교회총연합 (협력단체)
- 나.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협력단체)
- 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단체)
- 라.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공동회장 단체)
- 마.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단체)
- 바.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원단체)
- 사.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협력단체)
- 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협력단체)
- 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협력단체)
- 차.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글로벌호프 (협력단체)
- 카. 통인익스프레스·CTS기독교TV (협력단체)

27. 홍보사업

-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http://en.koreandiakonia.org>
-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봉KD>
- 다. 언론 광고
 - 고난 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국민일보 / 2022.03.04.)
 -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국민일보 / 2022.03.25.)

-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독교연합신문 / 2022.03.25.)
-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국민일보 / 2022.04.15.)
-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국민일보 / 2022.05.06.)
- 수해 이웃돕기 캠페인 (국민일보 / 2022.08.12.)
-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일보 / 2022.09.07.)
- 우크라이나 피란민 영하 30℃ 겨울나기 한국교회 희망밥차 긴급지원 캠페인
(국민일보 / 2022.11.02.)
-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기도회 (국민일보 / 2022. 11. 04)
- 우크라이나 피란민 영하 30℃ 겨울나기 한국교회 희망밥차 긴급지원 캠페인
(국민일보 / 2022.11.18.)
- 한국교회·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민일보 / 2022.12.02.)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귀하

본 감사는 2023년 1월 13일 11시부터 귀 기관의 2022년도 중
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
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
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 1. 13.

감사 김 옥 현



감사 박 홍 자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증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21년도 이 월 금 : 397,526,315원

2022년도 총 수입금액 : 1,980,728,526원


2022년도 총 지출금액 : 1,353,934,743원

잔 액 : 1,024,320,098원입니다.

(통장잔고 1,023,485,605원 /보유현금 834,493원)

다. 사무실 현금보유를 최소화하며 운영비 및 사업경비 지출시 현금 사용을 자제할 것.

라.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은 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김옥련


5. 2022년 결산보고서

2022년 KD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이월금	산출근거(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397,526,315	전년이월금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123,715,000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사업후원금	455,705,926	사업후원(서울시, 재해)
		지정후원금	800,000	지정후원금(죽방)
		일반후원금	1,387,683,080	일반후원금(회원사업후원금)
		소외계층영양지원후원금	4,871,000	지정후원금(국내외소외계층.영양지원후원금)
잡이익	잡이익	이자수입	941,247	예금에대한 이자수입
		잡이익	93,133	자동차채, 원단위 할인 등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55,000	선급법인세 환급금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6,864,14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총 계			1,980,728,526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무비	운영비	지급입차료	23,584,000	사무실 임대관리비(5-12월)
		통신비	1,204,983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외
		제세공과금	5,418,480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외
		운반비	6,200	택배 사용료 외
		도서연쇄비	942,000	신문구독료, 도서구입
		소모품비	2,629,06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여비교통비	300,000	교통통행료, 사무실시간주차료 등
		지급수수료	10,823,400	복합기/홈페이지/CMS/회계사기장/송금수수료
		차량유지비	2,479,200	법인차량주유비, 법인차량수리비, 월정주차료 외
		수도광열비	1,314,470	(이화동사무실)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1-5월)
	수선비	5,550,000	사무실(이화동>연합회관902호)이전 비용	
	소 계	54,251,793		
	업무비	업무추진비	3,485,750	업무추진 경비
		회의비	758,570	총재단/원로모임회의 및 각종 회의비
소 계		4,244,320		
민건비	급여	51,300,000	직원 급여	
	퇴직급여	31,663,107	퇴직 급여	
	복리후생비	2,622,640	건강보험료	
	소 계	85,585,747		
합 계			144,081,860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업비	구호사업비	국내구호(재해)	184,808,493	울진산불피해복구지원/이태원참사위로 경비
		재해구호(재해)	860,159,635	우크라이나전쟁재해구호 진행경비
		소 계	1,044,968,128	
	기획사업비	설날사랑나눔	8,304,700	설날사랑나눔 진행경비
		추석사랑나눔	11,905,760	추석사랑나눔 진행경비
		성탄절사랑나눔	10,766,510	성탄절사랑나눔 진행경비
		서해안기념사업	9,961,630	서해안기념사업 진행경비
		쪽방.주거위기가정돕기	2,900,000	쪽방,주거위기가정돕기 사업진행경비
		북한영육아지원	1,358,574	북한영육아지원 진행경비
		소 계	45,197,174	
	기타사업	사업추진비	402,960	사업관련 업무추진 진행경비
		행사비(총회)	39,419,570	총회 진행경비
		직원교육(연수)사업	375,000	직원교육 참가비
		홍보사업	11,900,000	월용연차보고서,C채널광고,CMC홍보영상제작
		기타사업	500,000	기독교신문57주년기념문서후원
		사업운영관리비	13,253,310	사업운영관리
		국내외사업지원비	16,148,501	대표단장,사무총장 활동경비
	소 계	81,999,341		
	조직사업비	네트워크강화	2,150,000	네트워크강화 및 유관기관 강화비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1,000,000	자원봉사네트워크강화 회비 및 경비
소 계		3,150,000		
합 계			1,175,314,643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임차보증금	26,800,000	연합회관902호임차보증금(40평*67)
		선납세금	142,46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26,942,460	
	합 계			26,942,460
잡손실	잡손실	잡손실	270,590	원단위절사 외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7,183,30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141,890	중도퇴사 환급금
총 계			1,353,934,743	

2022년 결산	이월금	397,526,315
	총수입	1,980,728,526
	총지출	1,353,934,743
	잔액	1,024,320,098
지정기금	기본자산	32,620,000
	퇴직금적립	28,336,893
	북한영유아영양지원금	46,622,068
	우크라이나사업추진금	684,354,321
	서울시소외계층지원금	2,013,755
	긴급재난구호기금	37,289,057
	차기이월 사업준비금	43,000,000
	이태원/서해안15주년	20,423,120
	사업추진금	129,660,884
	총잔액	1,024,320,098

6. 2023년 사업계획

1.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사업

가. 사업목표

-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 사업 추진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15주년 기념 컨퍼런스
- 15주년 기념 학술논문 공모
- 생태사료관 보충 및 확대
- 지역 목회자 모임 지원
- 기념 조형물 건립

라. 사업주관: 태안 피해극복 1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마. 사업예산

- 100,000,000 원

2. 조직사업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회원 간담회(5개 권역별 개최)
- 정기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임원회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3. 국내 재난구호 사업

가. 사업목표

- 전염병,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국내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나. 사업기간

- 2023년 재해발생시

다. 사업내용

- 코로나19 극복 지원

- 재해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재난지원본부
-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4.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1) 절기사업

- 가. 사업목표
 - 주요 절기에 소외계층 위로 및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 사업진행
 - 쪽방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로잔치 및 선물 전달
-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45,000,000 원

2) 쪽방촌 주민 지원사업

- 가. 사업목표
 - 서울지역 쪽방촌 주민 자립과 협동사업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다. 사업내용
 - 돈의동 쪽방촌 주민 500세대의 “헤뜨는 사랑방” 주민 공동체 협동사업 사업 지원
 - 동자동 쪽방촌 주민 1,000세대 반찬 나눔
-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국내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10,000,000 원

5. 북한사업

- 가. 사업목표
 - 북한지역 영유아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북한 영유아 영양강화식품 지원
- 북한 의료 지원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북한사업본부

마. 사업예산

- 50,000,000 원

6. 디아코니아포럼 사업

가. 사업목표

-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와 협력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관련 연구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기독교사회복지 영역별 세미나 진행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세미나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디아코니아포럼

마. 사업예산

- 20,000,000 원

7.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구성

가. 사업목표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구성
행사명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주 최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주 관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 구성 및 대회 준비
- 제4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사무실 개소
- 정부(문체부, 서울시) 및 한국교회총연합, 각 교단 협력

라. 사업예산

- 30,000,000 원

8. 홍보사업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 교회, 개인, 크리스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캠페인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 사업현장 동행취재 지원
 - 신문 및 방송 광고
 - 언론 광고를 통한 모금 캠페인 전개
- 홍보 대사 선정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 2022년 연차보고서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및 도서발행(도서출판 KD)

라. 사업주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국

마. 사업예산

- 50,000,000원

9. 연대사업

가. 사업목표

-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다. 사업내용

- 1) 한국교회총연합
-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3)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 4)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 5)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7)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 8) 전국재해구호협회
- 9) 각 교단 사회봉사부 및 교계연합단체

라. 사업예산

- 10,000,000원

7. 2023년 예산(안)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예산(안)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3년 예산금액
회비	회 비	125,000,000
후원금	사업후원금	345,000,000
기타수입	잡이익, 기타수입	8,000,000
	총 계	478,000,000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 분	2023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73,720,000
	업무비	8,000,000
	인건비	29,280,000
	관공비	22,000,000
	소 계	133,000,000
사업비	1. 태안 유류피해극복 15주년 기념사업	100,000,000
	2. 조직사업	20,000,000
	3.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20,000,000
	4.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55,000,000
	5. 북한사업	50,000,000
	6. 디아코니아 포럼사업	20,000,000
	7.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준비위원회	30,000,000
	8. 홍보사업	50,000,000
	9. 연대사업	100,000,000
	소 계	345,000,000
	총 계	478,000,000

8.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Diakonia”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호 및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2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2
 2. 경기지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3. 인천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4. 충청지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78
 5. 영남지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31
 6. 호남지회: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7. 강원지회: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및 북한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단체회원: 기독교 각 교단 및 교회,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2)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17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

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주관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②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총재단

제21조(총재단의 구성) 총재단은 총재, 부총재, 명예이사장, 이사장, 대표단장, 상임단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재단의 선임)

- ① 총재와 부총재는 본회 대표를 역임한 자로 한다.
- ②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로 총재단에서 추대한다.
- ③ 대표단장은 총재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3조(총재단의 임기)

- ① 총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총재단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총재단의 직무)

- ① 총재단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② 대표단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5조(총재단 회의)

- ① 총재단 회의는 총재단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② 총재단 회의는 전원 합의체로 운영한다.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총재단에서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 부서

제40조(사무국) ① 총재단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대표단장의 추천으로 총재단에서 임면한다.

④ 그 외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단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한국교회봉사단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회봉사단을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42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기구를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2016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12월	26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20년	6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1

		자산 분류	면적 (㎡)	평가액 (원)	출연자	비 고
기본 재산		대지		-		
		출연금		59,420,000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손인웅	
		소계		59,420,000		

9.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종류와 가입절차,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기독교 교단
- ② 위 ①항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
- ③ 위 ①②항에 해당하는 교단 및 교회가 설립 혹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④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제3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별표(1) 혹은 별표(2)의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가입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이사회에 부의한다.
 - 가. 해당교단 혹은 교회나 기관이 소속된 교단이 교육부 학위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인지 여부
 - 나. 신청 개인·기관/단체·교회·교단 및 소속·관련 기관이 제2조①에 해당되는 교단에 의해 이단관련 규정이 되었는지 여부
 - 다.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의 진위 여부
- ③ 가입승인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한다.

제4조(회원권리의 행사)

- ①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단체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사전에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및 제 부담금)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개인회원 월 1만 원 이상
- ② 단체회원 월 10만 원 이상

제6조(회원권의 제한) 정관 제7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3. 23.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가입신청서

단 체 명	(한글)
	(영문)
단체구분	<input type="checkbox"/> 교단 <input type="checkbox"/> 교회 <input type="checkbox"/> 기관/단체
대 표 자	(한글)
	(한문)
	(영문)
담 당 자	(한글)
	(한문)
	(영문)
주 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팩스) 이메일)
	대표자 전화) 팩스) 이메일)
	담당자 전 화) 팩스) 이메일) 핸드폰)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2. 교단/교회 설립 혹은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회칙, 내규 등 단체 규정
4. 대표자 이력서
5. 연혁이 포함된 기관·단체 소개

본 단체는 귀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단체명 : 대표자 : (인)

별표(2)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소속	교단		교회		기관 단체	
직분/직위	교단	/	교회		기관 단체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 첨부서류

- 1. 소속 교회/교단/기관·단체 대표의 가입 추천서
- 2. 이력서

본인은 귀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명 : (인)

20 . .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귀중